

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농어촌민박사업자 행정처분(과태료)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시설로서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6조의5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 미가입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82조에 따라 행정처분(과태료) 하고자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28일

인 제 군 수



- 공고기간 : 2024. 4. 1. ~ 2024. 4. 30.(30일간)
- 공고내용 :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민박 사업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
- 처분내용

연번	민박명	주소	운영자	처분내용	반송사유
1	노란잠수함	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인제읍 장수터길 00	이*순	과태료 부과	폐문부재
2	산골밥상민박	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기린면 설피밭길 000	김*서	과태료 부과	폐문부재

4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한 : 2024. 4. 1. ~ 2024. 4. 30.(30일간)
- 나. 제 출 처 :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44번길 105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농정과
- 다. 대 상 : 본인 또는 대리인(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)
- 라. 의견진술방법 : 서면 또는 구술(신분증 지참)

5. 기타사항

- 가. 위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.
- 나. 기타 문의사항은 인제군 농정과 농촌개발계(033-460-4707)로 연락 바랍니다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 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

홍천군수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